

기계공학과 졸업 요건

1. 기계공학과 교육과정 이수 기준표

구분	교양				MSC(기초도구)		전공 (설계·필수 포함)	졸업 학점
	교양 필수	교양 심화	교양 선택	계	공학교육 인증과정 필수	공학교육 비인증과정 필수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4	10	6	20	32	20	72	140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14		6	20	32	20	72	140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14		6	20	32	20	65	140

※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공학교육 비인증 과정대상자는 교필,교심,교선 구분 없이 20학점이상 이수

2. 졸업 논문 및 비교과 활동

구분	졸업논문	비교과활동
공학교육인증과정	○	비교과 활동(졸업에세이, 출구면접) (상세내용, 공학교육인증 학생 가이드북 참조)
공학교육비인증과정	○	해당 사항 없음

3. 외국어졸업자격인증

가. 공인어학성적(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에 응시하여 아래 표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자)

TOEIC	TOFEL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JPT	신(新)HSK
	PBT	CBT	IBT					
550	470	137	54	233	80	IL	535	4급/180

나. 공인어학성적 외 기타인정(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p>1. 외국어 공인시험인 TOEIC, TOEFL, New TEPS, TOEIC Speaking, OPIc(이상 영어), JPT(일어), 신HSK(중국어) 및 교내 모의TOEIC·모의 TOEC Speaking에 응시하여 학과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원스톱서비스·학생포트폴리오·비교과활동(공인)-공인외국어시험 등록</p> <p>2.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p> <p>3.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p> <p style="margin-left: 20px;">※2·3번 항목 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성적증명서(해당 과목 밑줄 표시) 및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첨부)</p>
<p>1. 수료후 4개 학기가 경과한 자 중 제1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는 학과에서 정한 외국어 인증기준표의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 style="margin-left: 20px;">- 개인별 외국어 성적표 사본 1부 첨부</p> <p>2. 수료 후 본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특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p> <p>3. 수료 후 본교에서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외국어 강좌를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p>

4. 지도교수상담 과목 4회 이상 S등급 취득

5. 진로교육 비교과과정 이수

금오공과대학교 진로교육 비교과과정 운영지침

제3조(교육 과정 개설) 진로교육은 8개의 과정으로 개설하며, 각 과정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1학기: 진로교육 I -1
2. 1학년 2학기: 진로교육 I -2
3. 2학년 1학기: 진로교육 II-1
4. 2학년 2학기: 진로교육 II-2
5. 3학년 1학기: 진로교육 III-1
6. 3학년 2학기: 진로교육 III-2
7. 4학년 1학기: 진로교육 IV-1
8. 4학년 2학기: 진로교육 IV-2

제7조(교육의 이수) ① 진로교육 적용 대상자는 이 지침 제3조 각 호의 진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1학년 신입생의 경우 8개 진로교육 과정, 2학년은 1학년 과목을 제외한 6개 진로교육 과정, 3학년은 1학년·2학년 과목을 제외한 4개 진로교육 과정, 4학년은 1학년·2학년·3학년 과목을 제외한 2개 진로교육 과정을 수강하여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학 전공의 경우 10학기 이내에 8개 과정을 수강하였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진로교육 과정별 5회(보강교육 포함)에 걸쳐 실시하는 교육 중 어느 한 회차의 교육을 수강하였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교차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학기당 최대 3개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④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그 이전 해당학기의 진로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하며, 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는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규정 제184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교환학생 및 학기제 현장실습생은 해당학기의 진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진로교육 이수 후 휴학 및 복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진로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편입학 및 재입학의 경우 그 이전 해당학기의 진로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⑧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에 의한 조기 취업자의 경우 해당학기의 진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⑨ 학칙 제68조에 의한 조기 졸업자의 경우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1]

진로교육의 대체이수 인정 범위

학년/학기		진로교육명	대체이수 인정 범위	비고
1학년	1학기	진로교육 I-1	진로탐색에 도움되는 2시간이상의 온라인강좌	교육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 (단, 수료증, 참가확인서 대체이수 인정 불가)
	2학기	진로교육 I-2	예)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심리검사 대학생활과 진로	
2학년	1학기	진로교육 II-1	진로선택에 도움되는 2시간이상의 온라인강좌	
	2학기	진로교육 II-2	예) 대학생 진로·취업지도 입문과정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3학년	1학기	진로교육 III-1	취업준비에 도움되는 2시간이상의 온라인강좌	
	2학기	진로교육 III-2	예) 인턴십 이해와 활용 직무이해와 취업준비 대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4학년	1학기	진로교육 IV-1	취업실현에 도움되는 2시간이상의 온라인강좌	
	2학기	진로교육 IV-2	예)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역량 강화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의 이해	
<p>대체이수 인정 교육은 매학기 진로교육 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각 학부(과) 및 진로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함.</p>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http://www.work.go.kr/cyberedu>)